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0-16

청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구합8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등

원고(선정당사자) A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7. 8. 17.

판 결 선 고 2017. 8. 24.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6. 1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별지 취득세 등 재부과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0-16

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저축은행'이라 한다)은 신용부금 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자금의 대출업무 등을 영위하는 저축은행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저축은행의 과점주주이다.

나. 이 사건 저축은행은 [redacted]시 [redacted]구 C 토지, 같은 구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같은 구 E건물 [redacted]동 [redacted]호(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취득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저축은행의 총 발행주식 800,000주 중 원고 등의 소유주식 수는 별지 주식 등 변동명세서 기재와 같이 2011. 9. 15. 이전에는 합계 548,932주(지분율 68.32%)였다가 2011. 9. 16. 합계 558,932주(지분율 69.87%)로 변동되었고, 이후 2013. 5. 31. 합계 562,156주(지분율 70.27%)로 변동되었다가 2013. 8. 2. 합계 606,156주(지분율 75.77%), 2014. 12. 5. 합계 610,156주(지분율 76.27%)로 각 변동되었다(그 중 원고 등이 2013. 5. 31. 이후 취득한 위 저축은행의 주식을 '이 사건 쟁점주식'이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 등이 다.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저축은행의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그 주식 증가분만큼 위 저축은행이 보유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지 취득세 등 당초 부과내역 기재와 같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원고 등이 취득한 위 주식 중 일부는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신설한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이 시행된 2014. 1. 1. 전에 취득한 것인데도 원고 등의 지분별로 배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부과하였을 뿐 아니라 납세고지서를 원고 등 각각에게 개별적으로 송달하지 아니하고 대표로 선정자 F에게만 송달한 잘못이 있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0-16

마. 이에 피고는 위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뒤 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2011. 9. 16. 취득한 주식에 대한 취득세 등은 다시 부과하지 아니하고, ② 이 사건 쟁점주식 중 2014. 1. 1. 전에 취득한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은 원고 등의 지분별로 배분·특정하여, 2017. 6. 12. 원고 등에게 별지 취득세 등 재부과내역 기재와 같이 재부과처분하였으며(이하 위 재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납세고지서를 원고 등에게 개별적으로 송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저축은행은 차주들이 대출금 상환을 연체함에 따라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을 허용하는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수밖에 없었고, 위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하여는 상호저축은행 중앙회의 표준규정에 따라야 하고,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위 저축은행의 과점주주인 원고 등이 위 부동산을 형식적·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통칭하여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7조 제5항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은 동일한 목적물 취득에 관하여 이 사건 저축은행과 과점주주 모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므로 이중과세가 될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과점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0-16

주에게도 위 규정을 적용하면 헌법상 비례원칙에 위반되거나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 등에 대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적용 여부

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구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하는 바, 이때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실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저축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위 저축은행의 과점주주들인 원고 등이 이 사건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위 저축은행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되었으며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이상 원고 등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이 적용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취득세는 취득자가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라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당시의 과세물건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이므로(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4헌바2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 사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0-16

저축은행이 대출금 상환을 받기 위해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거나 이후 관리 및 처분에 있어 상호저축은행 중앙회의 표준규정의 적용과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게 된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이중과세금지원칙 위반 여부, 비례원칙 위반 여부 및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 여부

가)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로서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가 발생하는 횟수에 따라 반복적으로 발생 가능한 것으로, 과점주주가 되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같게 되므로 위 법률조항에 따라 과점주주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인이 최초로 납부한 취득세와는 별개의 새로운 과세사실에 대한 취득세 부과로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해당 법인의 자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해당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이나 다름없게 되어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상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재산의 이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세력이 발생한 곳에 과세하는 것으로서 공평과세를 기할 수 있으므로 그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또한,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 취득세 부과는 일반적인 취득세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등, 일반적인 취득세 부과와 달리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에만 특별히 무거운 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비상장법인의 모든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설립 시의 과점주주는 취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0-16

사실적 지배력을 가진 과점주주에게만 취득세를 부과토록 하여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비상장법인 과점주주의 범위를 필요한 정도 내로 제한하고 있는 등, 위 조항이 추구하는 공평과세 부과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개인의 재산권 제한에 있어 필요 이상의 과잉된 수단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개인의 재산권 제한은 재산의 이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발생한 담세력에 따른 조세부담의 증가로, 위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과 비교하여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원고 등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앞서 본 취득세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등이 금융기관의 과점주주라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양태경

판사 김주식

판사 김기홍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0-16

선 정 자 목 록

1. A

2. F

3. G

4. H

5. I

6. J

7. K

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0-16

주식 등 변동명세서

○ 발행주식총수 : 800,000주 (단위 : 주, %)

변동일 / 과점주주		2011. 9.15.이전		2011. 9. 16.			2013. 5. 31.			2013. 8. 2.			2014. 12. 5.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증 가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증 가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증 가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증 가 지분율
	본인	320,834	40.10	320,834	40.10	-	320,834	40.10	-	320,834	40.10	-	320,834	40.10	-
	처	103,467	12.94	103,467	12.94	-	103,467	12.94	-	103,467	12.94	-	103,467	12.94	-
	자	-	-	3,750	0.47	0.47	3,750	0.47	-	3,750	0.47	-	-	-	-0.47
	자부	17,664	2.21	17,664	2.21	-	20,898	2.61	0.40	42,898	5.36	2.75	50,638	6.33	0.97
	자	12,000	1.50	12,000	1.50	-	12,000	1.50	-	34,000	4.25	2.75	34,000	4.25	-
	동생	42,752	5.34	42,752	5.34	-	32,152	4.02	-1.32	32,152	4.02	-	32,152	4.02	-
	조카	24,832	3.10	24,832	3.10	-	24,832	3.10	-	24,832	3.10	-	24,832	3.10	-
	조카사위	27,383	3.43	33,633	4.21	0.78	44,233	5.53	1.32	44,233	5.53	-	44,233	5.53	-
계		548,932	68.62	558,932	69.87	1.25	562,156	70.27	0.40	606,156	75.77	5.50	610,156	76.27	0.50

※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0-16

취득세 등 당초 부과내역

(단위:원)

처분일	납세자명	과세물건		취득일	과세표준 (장부가액× 취득지분)	취득세액 (가산세포함)	농어촌 특별세액 (가산세포함)	세액계
		소재지 (청주시 서원구)	면적 (㎡)					
2016. 11. 10.	F 외 7 (G, L, J, A, H, I, K)	C 토지 D 토지 및 건물	29,594 건물280.3 토지224.5	2011. 9. 16.	5,050,636 (404,050,930 ×1.25%)	176,420	17,640	194,060
				2013. 5. 31.	1,412,547 (353,136,840 ×0.4%)	44,050	3,830	47,880
				2013. 8. 2.	18,178,758 (330,522,880 ×5.5%)	560,180	48,730	608,910
		C 토지	29,594	2014. 12. 5.	689,936 (137,987,200 ×0.5%)	19,200	1,630	20,830
2016. 11. 10.		E건물 108동 704호	건물84.99 토지58.75	2011. 9. 16.	3,173,965 (253,917,200 ×1.25%)	110,850	11,060	121,910
				2013. 5. 31.	994,913 (248,728,250 ×0.4%)	31,000	2,690	33,690
				2013. 8. 2	13,394,457 (243,535,581 ×5.5%)	412,660	35,890	448,550
2016. 11. 10. (다만 기납부되어 2016. 11. 23. 감액처리)				2014. 12. 5.	1,191,723 (238,344,600 ×0.5%)	33,200	2,840	36,04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0-16

취득세 등 재부과내역

(단위:원)

처분일	과세물건 (소재지 : 청주시 서원구)	납세자	합계	취득세			농특세		
				본세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본세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계		1,118,070	668,750	133,690	226,310	66,790	-	22,530
2017. 6. 12.	C 토지, D 토지 및 건물 (2013.5.31 취득)	F	27,310	16,120	3,220	5,790	1,610	-	570
	E건물 108동 704호 (2013.5.31 취득)	F	19,220	11,350	2,270	4,070	1130	-	400
	C 토지, D 토지 및 건물 (2013.8.2 취득)	F	322,250	192,410	38,480	65,570	19,240	-	6,550
		G	103,970	62,090	12,410	21,160	6,200	-	2,110
		A	34,120	20,390	4,070	6,940	2,030	-	690
		I	24,880	14,870	2,970	5,060	1,480	-	500
		K	44,420	26,530	5,300	9,040	2,650	-	900
		J	43,050	25,710	5,140	8,760	2,570	-	870
		H	32,270	19,280	3,850	6,570	1,920	-	650
	E건물 108동 704호 (2013.8.2 취득)	F	237,420	141,770	28,350	48,310	14,170	-	4,820
		G	76,610	45,750	9,150	15,590	4,570	-	1,550
		A	25,140	15,020	3,000	5,110	1,500	-	510
		I	18,340	10,960	2,190	3,730	1,090	-	370
		K	32,730	19,550	3,910	6,660	1,950	-	660
		J	31,720	18,950	3,790	6,450	1,890	-	640
		H	23,790	14,210	2,840	4,840	1,420	-	480
	C 토지 (2014.12.5. 취득)	F, G, A, I, K, J, H (연대납세)	20,830	13,790	2,750	2,660	1,370		26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0-16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2153호, 2014.1.1.>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0-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5조(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7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과점주주가 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구 지방세기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0-16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위 구 지방세기본법과 이 법을 통칭하여 '구 지방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4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분할되는 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3.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에 합병되어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이하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라 한다)

③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해산하는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2.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④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新會社)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0-16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금지 행위)

①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업무용부동산 외의 부동산의 소유. 다만,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